

사단법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정관

제정 2020 · 1 · 10

개정 2025 · 2 · 27

제1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영문으로는 Busan Finance Center(BFC)로 표기한다.

제 2 조(소재지)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(문현동)에 둔다.

제 3 조(목적) 진흥원은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·시행하고, 금융 관련 중·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 진흥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국제금융도시 발전 및 금융산업 육성 연구 수행 및 전략 수립
2. 부산 금융중심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
3. 해양금융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사업(각종 해운항만업 관련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수행 및 전략 수립)
4. 국내·외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의 유치전략 수립 및 시행
5. 금융 관련 교육(전문인력 양성 포함) 및 산·학·연·관 네트워크 운영
6. 금융 관련 박람회·세미나·포럼 및 회의 개최
7. 금융정책 연구 수행과 금융 데이터베이스 구축
8. 부산시·금융관련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상호간의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
9. 대북한 금융시스템 구축 지원(금융관련기관의 대북 사업 지원, 북한금융관계자 교육·훈련 지원)
10. 부산국제금융센터(BIFC) 입주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
11.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
제 5 조(수익사업) 진흥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2장 사 원

제 6 조(사원의 자격) 진흥원의 사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사원 : 진흥원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분담금(기부금 및 보조금 포함)을 납부하는 금융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총회의 의결을 얻은 자를 정사원으로 한다. 정사원은 특별사원이 제공받는 혜택을 제공받으며, 사원총회를 구성하고 당해연도 분담금 분담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사원총회의 의결은 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<개정 2023.12.19.>
2. 특별사원 : 진흥원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부금 등을 납부하는 금융 및 금융외 관련 기관 또는 개인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얻은 자를 특별사원으로 한다. 특별사원은 진흥원으로부터 각종 연구보고서, 소식지 등을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사원은 사원총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 7 조(사원의 가입) 진흥원의 사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8 조(사원명부) ①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②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사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 수권 또는 법정자본금 및 납입자본금

③사원은 사원명부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원장은 변경사항을 사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9 조(분담금) ①정사원은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정사원의 분담금 분담비율 또는 분담금액과 납부방법 등은 총회에서 정한다.

제 10 조(사원의 대표권) ①사원으로서 진흥원에 대한 일체의 행위는 사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행할 수 있다.

②사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원의 대표권은 신규로 사원의 대표자가 된 자가

자동 승계한다.

제 11 조(사원자격의 상실) ①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실한다.

1. 사원이 서면으로 탈퇴를 신청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
2. 사원이 파산, 해산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

②제1항 제1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총의결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.

제 12 조(사원의 제명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.

1. 진흥원의 정관·제 규정·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경우
2. 진흥원의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,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②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총 의결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.

제3장 사원총회

제 13 조(총회의 구성 및 소집) ①총회는 정사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이 소집한다.

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의장은 서면에 의한 권한위임의 방식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.

③총회의 의장이 유고시에는 정사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자, 정사원의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⑤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
⑥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총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
3. 정사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과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소집을 청구한 경우

⑦제6항제3호의 경우 총회의 의장은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⑧총회의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써 각 정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총회의 의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4 조(총회의 의결방법) ①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정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장이 결정한다.

②각 정사원은 분담금 분담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사원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총회의 의결에 있어 각 정사원은 서면에 의한 권한위임의 방식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.

④총회의 의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 15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원의 가입 및 탈퇴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분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6. 기본재산의 처분, 장기차입에 관한 사항
7.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총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 16 조(총회 의사록)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장과 출석 정사원의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4장 임원 및 직원

제 17 조(임원의 정수) ①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원 장 : 1인
2. 이 사 : 15인 이내
3. 감 사 : 1인

②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경우에도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.

제 18 조(이사의 선임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재임기간 중 총회의 선임없이

당연히 이사가 된다.

1. 부산광역시 : 금융업무담당 실장 또는 국장
2. 한국거래소 : 기획담당 본부장보
3. 한국예탁결제원 : 전략기획담당 본부장
4. 한국자산관리공사 : 경영기획담당 임원 또는 실장급 <개정 2025.2.27>
5. 한국주택금융공사 : 경영기획담당 임원
6. 한국해양진흥공사 : 경영기획담당 임원 또는 실장급
7. 부산은행 : 경영기획담당 임원
8. 기술보증기금 : 경영기획담당 임원
9. 코스콤 : 경영기획담당 임원 <개정 2025.2.27>

제 19 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8조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이사가 궐위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이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전임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20 조(감사) ①감사는 총회를 구성하는 정사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불비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21 조(임원의 해임) 진흥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진흥원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3.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 22 조(원장) ①원장은 총회를 구성하는 정사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원장의 궐위시에는 총회의 의장이 법인을 대표한다.

제 23 조(직제) 진흥원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24 조(직원의 임면) ①진흥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.

②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장 이 사 회

제 25 조(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) ①이사회는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②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 이 경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.

③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인 이상이 서면으로써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소집한다.

⑤의장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원장 및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6 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27 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흥원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총회의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
6.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이사회는 의장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 28 조(의사록)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 29 조(재산의 구분) ①진흥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②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0 조(기본재산의 처분)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31 조(수입금) 진흥원의 수입금은 사원기관이 지원하거나 기부하는 분담금 또는 기부금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의 수익금,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,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 32 조(기부금의 공개)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 33 조(회계연도)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34 조(예산편성) ①진흥원의 세입·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
③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
제 35 조(차입금) 진흥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 36 조(결산)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 37 조(회계감사) 감사는 법인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8 조(임원의 보수)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장 보 칙

제 39 조(정관의 변경) ①정관은 총회의 의장 또는 정사원의 의결권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의결은 총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.

③정관의 변경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40 조(규정의 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41 조(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) ①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정사원전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.

②진흥원이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 <개정 2020.4.17.>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①이 정관의 시행 당시 진흥원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한다.

②진흥원의 설립당시의 임원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원장의 선임 전까지 총회의 의장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경비집행 등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진흥원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한다. 다만,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이 기간 중에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(발기인) ①진흥원의 발기인 중 분담금을 납부키로 한 자는 설립 당시의 정사원이 되며 발기인의 명칭, 주소 및 그 대표자 등은 별표와 같다.

②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민법 제40조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> 설립 발기인 <2020. 1. 10.>

명 칭	주 소	대표자	직인 날인
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(연산동)	오 거 돈	
(주)한국거래소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(문현동)	정 지 원	
한국예탁결제원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(문현동)	이 명 호	
한국자산관리공사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(문현동)	문 성 유	

한국주택금융공사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(문현동)	이 정 환	
한국해양진흥공사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, 씨1동 7층(우동, 해운대아이파크)	황 호 선	
(주)부산은행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(문현동, 부산은행 본점)	빈 대 인	
기술보증기금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(문현동)	정 윤 모	